



"2025 매일경제·KPGA GOLF EXPO" 참가신청계약서

2025. 2. 7(금) ~ 2. 9(일) / 코엑스B홀

1. 신청자/계약자 정보

업체명	국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대표자		
			홈페이지		
전시회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직통번호		휴대폰		이메일
세금계산서 담당자			연락처		계산서 이메일
전시품					

2. 부스 신청 및 부대시설 신청

구분	신청 내역(A)	단가 (VAT별도)(B)	신청금액(VAT별도) (A*B)
독립부스	부스	2,400,000원/부스	원
조립부스	부스	2,700,000원/부스	원
오픈부스	부스	2,700,000원/부스	원
프리미엄 부스(목공)	부스	3,000,000원/부스	원
전기	단상 220V(60Hz)	kW	100,000원 / kW
	삼상 220V(60Hz)	kW	100,000원 / kW
	삼상 380V(60Hz)	kW	100,000원 / kW
	24 시간	kW	150,000원 / kW
인터넷	Port	180,000원 / Port	원
압축공기/급배수	개소	250,000원 / 개소	원
합계			원
부가세(10%)			원
총 합계			원

3. 참가비 납입정보 및 기한 안내

참가비 납입계좌	예금주(매일경제신문사) 우리은행 101-05-024596
참가비 납입기한	사무국 승인 - 인보이스 발행 후 - 1주일 이내
참가비 잔금 납입기한	2025년 1월 17일

당사는 본 전시회 참가 규정 및 계약조건(이면 수록)을 수락하고, 상기와 같이 참가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표자	(인)	담당자	(인)	계약 일자
-----	-----	-----	-----	-------

- 본 계약서에 날인한 상기 회사는 본계약을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한다.
- 본 계약서에서 제공해 주신 정보는 전시회 참가와 관련된 안내를 위하여 활용됩니다.

"2025 매일경제·KPGA GOLF EXPO" 전시회 참가 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회"라 함은 "2025 매일경제·KPGA골프엑스포"를 말한다.
2. "전시자"라 함은 본"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주최자"는 (주)매일경제와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와 케이웨어스(주)를 말한다.

제 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전시자"의 출품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접수 후에도 "주최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참가신청 철회와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려 할 수 있다.
2. 참가신청은 조립부스는 최소면적1부스(9㎡)이며, 독립부스의 경우 최소면적 2부스(18㎡) 이상 신청 하여야 한다.

제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부스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효과적인 "전시회"운영을 위해 부스의 위치와 규모 등을 "전시자"와 협의 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장 사용 기간 및 부스 배정

1. 전시일정은 2025.2.7(금)~2.9(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2. 준비일정은 2025.2.6(목) 1일간이며, 철거일정은 2025.2.9(일) 행사 종료 당일이다.
3. 전시장 사용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12시간이며, 추가 작업시간 사용 시 "전시자"가 사용자(임대료, 전기료 등) 비용을 부담 한다.
(※ 시간 외 사용자: 1,000,000원/1시간)

제5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전시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에는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복구요청등에 따라 적절 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자사의 전시물품 또는 관련장비의 관리책임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주최자"는 이의 도난, 파손, 화재 등 전시장 내에서 예상 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일체 보상 하지 않는다. 또한, "전시자"는 자사의 시설물(전 시물)로 인해 "참관객"의 상해 또는 타 "전시자"의 시설물(전시물) 파손 시 배 상해야 하며, 그로 인해 "전시회" 진행 불가 시 "주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전시자"의 과도한 음향(소음) 방출로 주변 "타 전시자"의 전시업무(상담 등)를 방해하는것으로 판단 될 때에는 "주최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그에 따른 손해 배상과 관련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6조 설치 및 철거

1. "전시자"는 "주최자"가 지정기간 이내에는 모든 전시품 설치하고 전시품 (시설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 반 비용(임대료, 전기료 등)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부스 설치 제한 및 방화 규정

1. 모든 시설물(전시물)의 높이는 전시규모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최자"가 지정한 높이 5m 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
2. 전시장 내 시설물의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 처리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 시 시정을 요구, 또는 퇴점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무조건 수용 한다.

제8조 참가비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부가세포함)의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3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50%는2025년01월 17일 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계약금과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참가비, 부대시설비 등 제반비용 미납 시, "주최자"는 완납 시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으며,이경우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전시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신청 해지 및 해지에 따른 위약금

1. "전시자"가 기 신청한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할 시 "주최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취소 또는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취소 후15일내"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반환한다.
 - 개막 60일 이전: 취소(축소) 시 원 참가비(부스비)의50% 납부
 - 개막 50일 이전: 취소(축소) 시 원 참가비(부스비)의70% 납부
 - 개막 30일 이전: 취소(축소) 시 원 참가비(부스비)의100% 납부
3. 환불 일정은 "주최자"의 지급 일정에 따른다.

제10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 또는 일정변경 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또한, 국가 위기상황,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최자"가 일정변경 또는 취소 시 "전시자"는 관련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1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전시자 매뉴얼, 보충규정, 전시장 운영 규정 준수

1. "주최자"는 전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시자"에게 제공 한다.
2. "주최자"는 필요 시 본 규정 외 보충규정을 제정 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본 규정과 함께 보충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전시장 운영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정 해석과 분쟁 해결

1.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주최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본 "전시회"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